#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8. 1. 17. 개정 판 (시행 2017. 9. 1.) → 2020. 2. 24. 개정 판 (시행 2019. 12. 1.)

바뀜 3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17/compare?from=793&to=950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6:37:37 · 밑줄은 바뀐 부분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조(조직)**<br>1. 원장<br>(1)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전산팀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8-01-17〉<br>(2) 〈삭제〉〈개정 2018-01-17〉<br>2. 팀장<br>원장을 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br>3. 직원(전문직, 사무직, 기타) 약간 명<br>전문직원은 전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한다.<br>4. 조교 약간 명<br>5.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01-17〉<br>(1) 개발운영업무〈개정 2018-01-17〉<br>가. 학사 행정 지원<br>나. Application 개발<br>다. Mainframe 운영<br>라. 전산서버관리<br>마. 정보보호, 보안 관리<br>(2) 전산지원업무〈개정 2018-01-17〉<br>가. 전산교육 지원<br>나. 사용자 지원<br>다. 전산자원 관리<br>라. 전산망 관리 | **제3조(조직)**<br>1. 원장<br>(1)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전산팀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8-01-17〉<br>(2) 〈삭제〉〈개정 2018-01-17〉<br>2. 팀장<br>원장을 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br>3. 직원(전문직, 사무직, 기타) 약간 명<br>전문직원은 전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한다.<br>4. 조교 약간 명<br>5.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01-17〉<br>(1) 개발운영업무〈개정 2018-01-17〉<br>가. 학사 행정 지원<br>나. Application 개발<br>다. Mainframe 운영<br>라. 전산서버관리<br>마. 정보보호, 보안 관리<br>(2) 전산지원업무〈개정 2018-01-17〉<br>가. 전산교육 지원<br>나. 사용자 지원<br>다. 전산자원 관리<br>라. 전산망 관리<br>바. 홈페이지 운영관리〈신설 2020-02-24〉 |
| **제6조(구성)**<br>①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학술정보원팀장(서기), 재무실장, 내부감사, 사무부처장,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 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br>②〈삭제〉〈개정 2018-01-17〉<br>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br>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제6조(구성)**<br>①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정보전산팀장(서기), 재무실장, 내부감사, 사무부처장, 기획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 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br>②〈삭제〉〈개정 2018-01-17〉<br>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br>④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9조(운영 세칙)**<br>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운영 세칙)**<br>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br>2.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20-02-24〉 |

##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직) 1. 원장
(1)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전산팀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2. 팀장
원장을 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3. 직원(전문직, 사무직, 기타) 약간 명
전문직원은 전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한다.
4. 조교 약간 명
5.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발운영업무
가. 학사 행정 지원
나. Application 개발
다. Mainframe 운영
라. 전산서버관리
마. 정보보호, 보안 관리
(2) 전산지원업무
가. 전산교육 지원
나. 사용자 지원
다. 전산자원 관리
라. 전산망 관리
바.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제1항 중 "학술정보원팀장(서기)"를 "정보전산팀장(서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 세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